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생산등록번호	축산과-23724
등록일	2026. 5. 29.
결재일	2026. 5. 29.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축산정책팀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동민	조해선	신기환	전결 2026. 5. 29. 강용원	

2026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추진계획



정 읍 시
[축 산 과]

2026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추진계획

I 추진 목적

- 가. 화재 발생 전 시스템 및 감지 장비를 통한 조기 감지 및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대형 재산피해방지
- 나. 축사 내 전원, 온도 및 습도, 사육환경 등 실시간 감시로 사양관리 개선 및 화재예방을 통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II 사업 개요

- 가. 사업기간 : 2026. 8월 ~ 12월
- 나. 사업량 : 19개소
- 다. 사업비 : 76,065천원(균특 23,580 시비 14,452 자담 38,033)
 - 재원비율 : 균특 31% 시비 19% 자담 50%
- 라. 지원한도 : 4백만원/개소
- 마. 사업내용 : 축사화재 및 전기장치 이상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 설치 등 시스템 구축비용 및 화재발생 차단 장비 설치 지원
- 바.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곤충생산(사육) 신고농가
 - 우선순위(평가항목에 배점으로 차등화하여 평가반영)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
 - ※ 농가의 모든 축사동(관리사 포함)을 설치하는 농가 우선지원
 - (1순위) 「축사 전기 안전점검 지원사업」 사업완료한 농가
 - (2순위) 화재위험등급이 낮은 농가(C,D등급)
 - (3순위) 소규모 농가
- ※ 지원제외 : 2년간(2026년 ~ 2025년) 사업포기자,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 구제역 항제양성을 미만농가(2023년 ~ 2024년)

사. 지원품목 및 제품 선정 조건

1) 자동화재속보설비

- 전기 이상 신호 감지 및 화재 감지 후 농장주 등에게 전화, 문자 등 무선으로 통보가 가능한 제품

- 장비 및 시스템은 특허 또는 공공기관에서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 사후관리가 용이할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 아크(Arc) 차단기

- 배선회로 등에서 아크(Arc)* 발생을 감지하여 전기회로 등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제품

* 아크(Arc) : 전극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극 사이의 기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절연 파괴의 일종(전기적 전류의 방전현상). 전기 회로가 단락될 경우 스파크 등이 발생하며(열 발생), 주위의 가연물질(먼지, 피복 등)에 인화되어 화재 발생

3) 소공간(분·배전반) 자동 소화장치

- 소공간(분·배전반)에 설치하여 온도 변화 및 화재 등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하는 제품일 것

4) 열·연기·정전 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제품

5) 소화기

- 3kg 이상 용량으로 물이나 소화약제를 수동으로 압력에 의해 방사하는 가압식 또는 축압식 제품

6) 개보수 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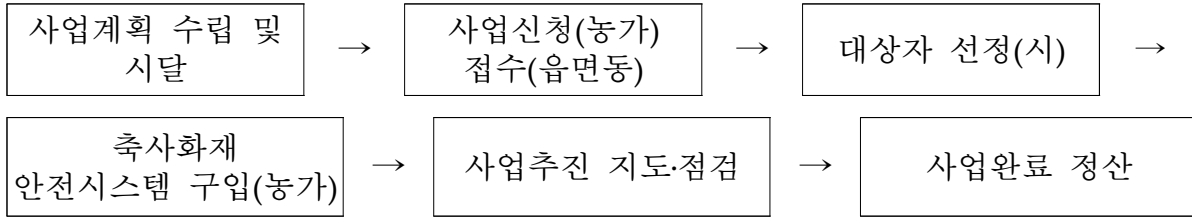
- 「축사 전기 안전점검 지원사업」 사업 완료 후 부적합 사항 조치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7) 제품선정 공통사항

- 품질보증(인증) 및 A/S가 용이한 제품을 선정
-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 생산된 제품 우선 선정
- ※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가 우수한 도내업체 선정 권고

Ⅲ 추진체계 및 요령

가. 추진체계



《 시 》

- 1)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축산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읍·면·동 : 사업신청서, 평가표, 구비서류 검토 후 신청기한 내 제출
- 2)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축산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도에 보고 : 2025. 2월말까지
- 3)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4)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사업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에 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완료(제품공급, 설치사진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 * 사업완료 금액이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1) 사업 신청 기한 내 시에 사업신청서 제출
- 2) 대상자 확정 시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및 화재예방 장비 신속히 구입 및 설치
- 3)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4)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

나.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 》

- 1)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2) 사업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1)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 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다.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 1)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2)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3)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IV 행정 사항

가.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2026. 7. 30.까지
나. 사업대상자 선정	2026. 8. 21.까지
다. 사업 추진 및 완료(정산)	2026. 12. 말까지